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G20 반부패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소개('23.8.11.)
- ②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된다('23.8.9.)
- ③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436건 개선 권고('23.8.17.)
- ④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본격 시작('23.8.18.)
- ⑤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23.8.1.)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2)

G20 반부패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소개

-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 강화 -

(’23. 8.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인도 콜카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반부패 각료회의에 참석해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G20 반부패 각료회의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반부패 분야 장관급 회의로서 올해는 G20 의장국인 인도에서 개최된다.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 창설 10주년을 기념해 2020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개최(화상회의)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싱가포르, 모리셔스 등 초청국을 비롯해 UNODC,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는 전 세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부패 각료회의 결과문서 및 의장요약문, 3가지 고위급 원칙*, 사법공조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사역할 증진에 대한 사례집 등이다.

* ▲반부패 기관의 청렴성 증진, ▲법집행 협력 및 정보공유 증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에 대한 고위급 원칙

또한 2023년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CWG)을 통해 마련된 사법공조에 관한 이행보고서와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감사 역할에 대한 우수 사례집도 발표되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제협력 노력과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반부패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민원연금부 장관(지텐드라 싱, Jitendra Singh)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G20 등의 국제회의체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패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반부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도 인사민원연금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3. 8. 12.(토), 인도 콜카타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래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제3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8.9.-11.) 직후 개최 예정

○ 참석자

- G20 회원국, 초청국 및 UNODC, 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 주요 의제

- 반부패 각료회의 결과문서 채택
- 장관급 공동선언문 채택
- G20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수석대표 발언
- 사법공조에 대한 이행보고서 및 감사 역할 강화에 대한 우수 사례집 등 성과물 발표

□ 회의 주요 일정

시간	내용
오전	<환영사> 인도 인사훈련부
	인도 모디 총리 영상 메시지
	<의장국 인도 발언> 인사민원연금부
	공동의장국 이탈리아 발언
	트로이카 국가 발언 (전년도 및 차년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
	G20 회원국 발언
	초청국 발언
오후	국제기구 발언
	2023 이행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표
	제2차 반부패 각료회의 결과문서 채택
	<폐회사> 이탈리아 공동의장 및 인도 반부패 실무협의단 의장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된다

-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기준 마련 -

(‘23. 8. 9. 국민권익위)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즉,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표적인 사례 〉

- ☑ 장관A가 신고한 사건을 해당 부처의 외청인 ○○청 소속 공직자B가 조사하게 된 경우
⇒ 장관A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대표적인 사례 〉

- ☑ 공직자A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피의자B를 고소해 놓은 상황에서, 피의자B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게 된 경우
⇒ 공직자A는 피의자B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의 일정, 범위, 강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사례 〉

-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A가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B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공직자B는 공직자A가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공직자A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한 경우
⇒ 공직자A 자신이 해당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는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 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까지 연장해야

-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10.8.) 운영 -
- 혈세 낭비하는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등 지역사회 부조리 근절 -
-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436건 개선 권고 -

(‘23. 8. 17. 국민권익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 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 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평가 대상)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현황 >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18,030개	13,181개	2,646개	1,697	506개

- (평가 결과) 23개 개선과제에서 436건 개선권고

< 개선권고 주요 내용 >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준공된 건설공사'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자의적 출장심사 생략기준·출장 제한기준 명확화, 구체적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심사위 민간위원 위촉방식 개선 및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 의무화

○ **시·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지휘자 등 직책단원 채용방식 개선 및 불명확한 단원 채용규정 삭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및 채용 전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 미술작품설치심의위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

○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 투자유치위 내·외부위원 자격 및 위·해촉 기준 마련,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지역 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 지역축제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개선

○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 및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 포상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 취소 절차 마련

○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윤리심사자 문위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규정 마련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사적사용 제한기준 정비 및 부당 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의원대상 교육 및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의무화

○ **공용차량 관리 강화**

-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및 정수·운영 차량 현황 홈페이지 공개,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제한

○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범위 확대(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 및 운임·숙박비 지급방식 개선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징수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 포상금 지급 제외 및 불명확한 포상기준 명확화,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보장, 포상금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 개선

○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연구용역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금고지정심의위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협력사업비 공개 강화

○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에 조례로 추가한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 보조금 부정 수령 시 의무적 환수 규정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시 구체적 산정비율 명시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우선계약 신청자 및 우선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

○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수탁자선정위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및 구체적 위원 자격요건 명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

○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 모호한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삭제 또는 구체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본격 시작

- 27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직접 묻는다 -
- 올해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 새롭게 도입 -

(‘23. 8. 18. 국민권익위)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시행 2년째이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 종합청렴도 점수(100%)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 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기관유형별 1~5등급으로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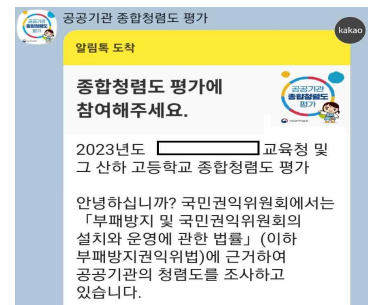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16개 유형의 총 629개 기관으로 작년 대비 60개 기관 확대했으며, 특히 올해는 최초로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 접점, 취약분야의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 2023년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 >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 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 공단)	Ⅴ (연구원)			광역	기초 (시)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조사를 기존 문자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확대 활용해 응답자 편의와 응답률 제고를 도모한다.



< 카카오톡 설문 예시 >

청렴체감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직접 부패인식과 경험을 물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외부체감도**

구분	외부업무(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투명성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⑦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내부체감도**

구분	조직내부 운영(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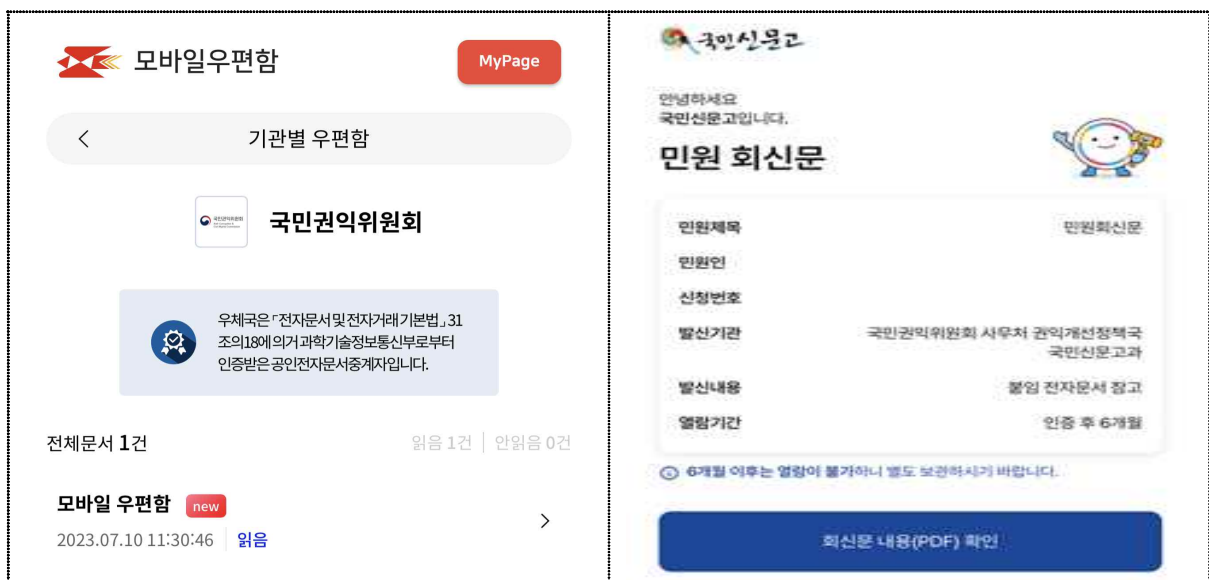
-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에서 확인 가능 -

(‘23. 8. 1. 국민권익위)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우편함 앱 화면 예시 >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서면(우편)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서면 통보 민원 건수 41만 4천 건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 국민신문고 화면 예시 >

진행상황 통지방식	☒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휴대전화 선택 시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이 통지(09시~18시) 됩니다. ※ 카카오톡 계정이 없거나 국민신문고 채널을 차단한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 알림 수신 당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모두 발송될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 통지방식	☒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우편	☒ 서면(종이우편, 전자문서)
※ 전자문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수신·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외의 방법으로 본인인증 이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에 회원가입 및 등록된 기관만 지원합니다. ※ 전자문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